

#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, 용도구역)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119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, 용도구역)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안
2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, 용도구역) 결정(변경) 안
  - 변경 : 도시계획시설 (74개소)
    - 공원(69) :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등 69개소
    - 기타(5) : 녹지(2), 유원지(1), 체육시설(1), 학교(1)
  - 신설 : 도시자연공원구역 (72개소)

구분	도시계획시설				도시자연공원구역 (신설)	
	기정		변경		개소	면적(km <sup>2</sup> )
	개소	면적(km <sup>2</sup> )	개소	면적(km <sup>2</sup> )		
<b>총계</b>	74	108.28	65	17.44	72	67.57
<b>공원</b>	69	107.85	64	17.36	67	67.23
도시자연공원	20	88.10	-	-	18	57.91
근린공원	48	18.91	63	17.01	48	9.00
주체공원	1	0.83	1	0.35	1	0.32
<b>기타</b>	5	0.43	1	0.08	5	0.34
녹지	2	0.14	1	0.08	2	0.05
유원지	1	0.16	-	-	1	0.16
체육시설	1	0.11	-	-	1	0.11
학교	1	0.02	-	-	1	0.02

### 3. 입안사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라 실효가 예상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4. 주민 의견청취

- 열람기간 : 2019.10.14. ~ 10.28. 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)
- 공고게재 : 일간신문 2개사(아시아경제, 내일신문), 서울시홈페이지

#### 5. 환경성 검토

- 본 안건은 도시공원 등 임상이 양호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 사항으로써 개발사업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생태면적, 지형, 경관 등의 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.

#### 6. 기 타

- 재원조달계획 : 시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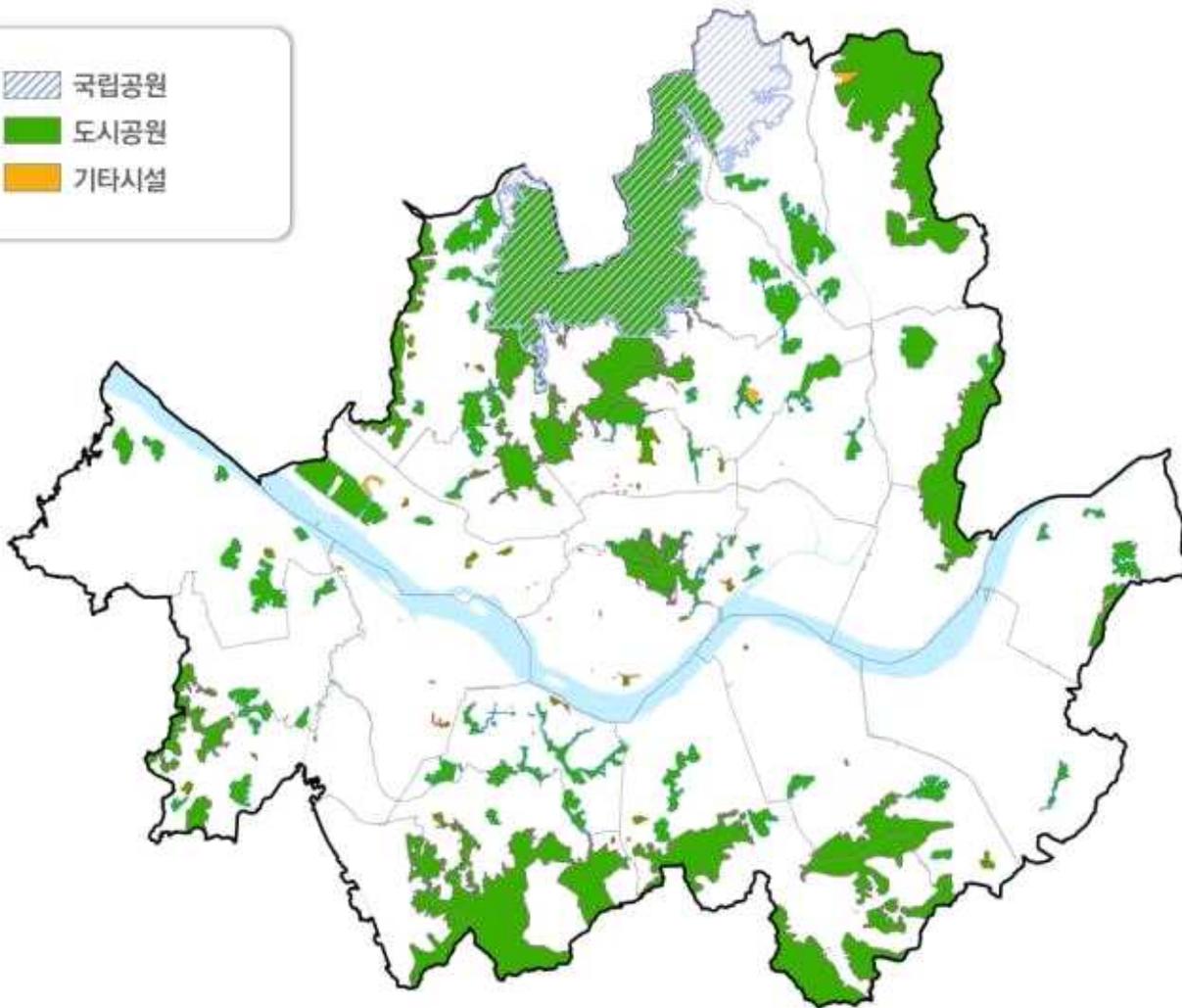
구분	금액 (억 원)			비고
	합 계	2019	2020	
도시공원(보상)	15,298	9,600	5,698	

#### ○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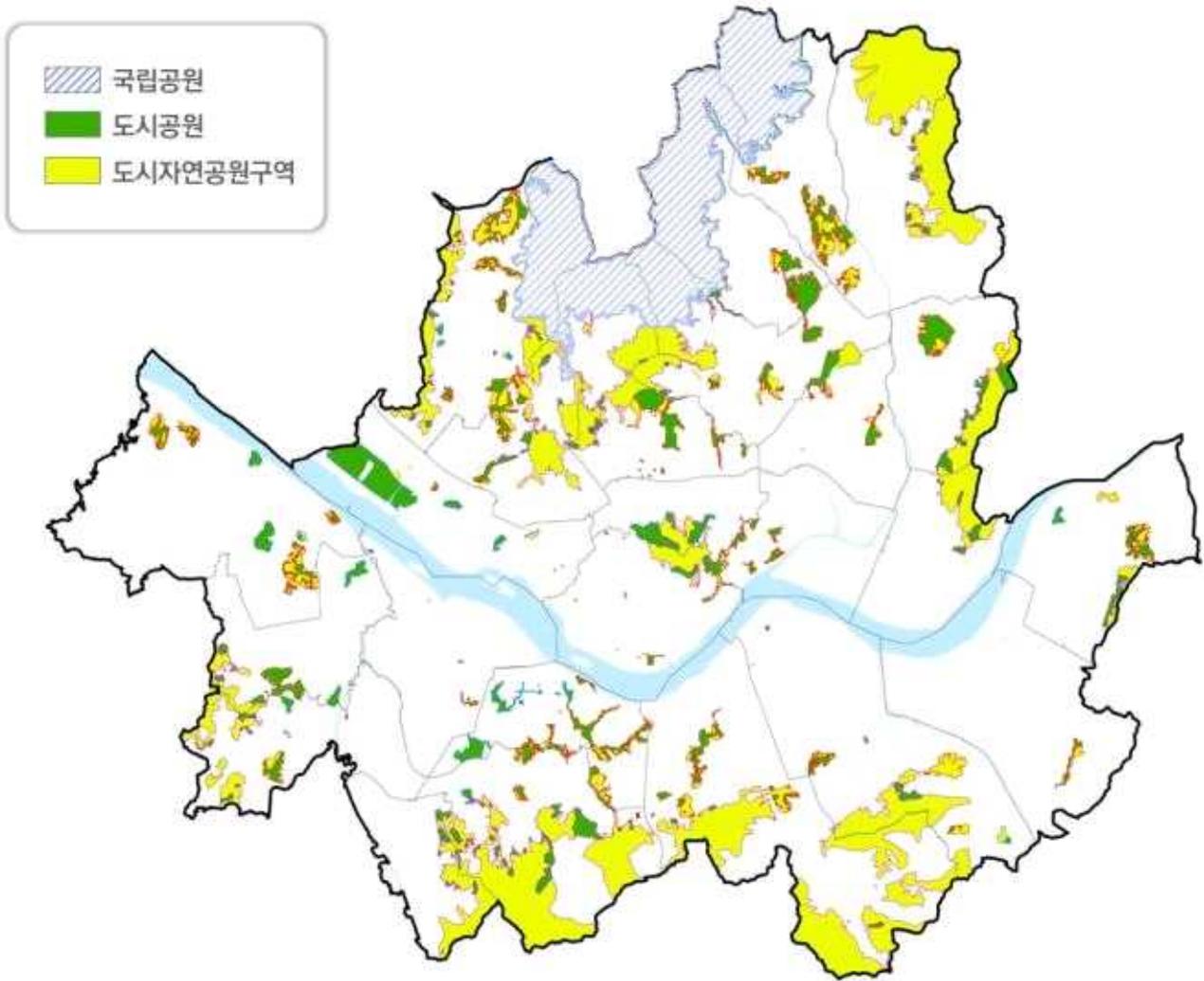
- '18. 1~ 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T/F운영 (18회)
- '18. 4. 29 :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(시장방침 제74호)
- '19. 1.~ :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단 운영 (8회)
- '19. 5. 31 :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
- '19. 6.~ : 도시관리계획 변경(안) 시·구 합동 검토회의(40회)
- '19. 9. 18 :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(원안가결)
- '19.10. 2 :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
- '19.10. 7 :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 (푸른도시국)

붙 임 : 관련도서 1부. 끝.

□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, 용도구역) 결정(기정)도



□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,용도구역) 결정(변경)(안)도



※ 작성자 : 시설계획과 도시공원계획팀 김봉선 (☎ 2133-8458)